

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05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0. 07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19. 10. 08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19. 10. 16.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증가 추세에 있는 해난사고와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보조대상 사업의 확대
- 해난 및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추가(안제6조제4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7조
나. 예산조치: 관련 부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
다. 합 의
1) 기획감사담당관(법무개혁담당): 규제심사
2) 복지지원과(여성가족담당): 성별영향분석 평가
라. 기 타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19-1153호

가) 예고기간: 2019. 8. 29. ~ 21019. 9. 18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 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증가 추세에 있는 해난사고와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보조대상 사업에 해난 및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연안해역 안전순찰과 현장지도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및 「자원봉사 활동 기본법」 제7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의 내용에 적정하며,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7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

- 2019. 10.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